

의안번호	제 105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발 의 자	임 기 중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11월 21일

#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( 임기중 의원 대표발의 )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18년 11월 21일

발 의 자: 임기중, 김영주, 서동학,  
이의영, 황규철, 이숙애,  
박성원

## 1. 제안이유

충청북도 학생의 자살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자살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)
- 다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- 라. 전담기관 설치·운영(안 제6조)
- 마. 담당자 지정(안 제7조)
- 바. 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(안 제8조)

사. 자살예방·생명존중문화 조성(안 제9조)

아. 실태조사(안 제10조)

자. 예산지원(안 제11조)

차. 비밀준수 의무(안 제12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8-56호

2018. 11. 1. ~ 2018. 11. 21.(20일간, 특이의견 없음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체계적인 학생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식 함양과 학교의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“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”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·정신적 건강의 보호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교육감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**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.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학생 자살 현황 분석
2.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
3.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

4. 학생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
5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교직원 연수
6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
7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예산 확보
8.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9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위원회의 설치 등)**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전담기관 설치·운영)**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(담당자 지정 등)** ①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)** ①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과 그 가족 또는 자살학생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

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·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자살예방·생명존중문화 조성)**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자살예방·생명존중문화 주간 지정·운영)**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실태조사)**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2조(예산 지원)**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3조(비밀준수의 의무)** 학생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[시행 2017.8.9.] [법률 제14561호, 2017.2.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“자살위험자”라 한다)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,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살실태조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,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생명존중문화 조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

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6조(자살예방의 날)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,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.  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자살예방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4.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자살예방 상담·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·교육,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자살예방을 위한 홍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

제20조(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,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·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4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 마련
- 학생들의 생명존중의식 함양 및 자살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자살시도학생 및 그 가족, 또는 자살학생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지원근거 마련
-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

## 3. 관련조문

- 제7조(담당자 지정 등)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8조(자살시도 학생 등에 대한 지원) ①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그 가족, 또는 자살학생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2조(예산 지원)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,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

나. 추계 결과

(단위: 천원)

연간 운영비 추계		연도별 운영비 추계					
산출기초	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합계
1. 학생정신건강지원	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<b>618,100</b>
가. 위기학생치료비지원 500,000원× 60명=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<b>150,000</b>
나. 학생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 93,620,000원×1식=	93,620	93,620	93,620	93,620	93,620	93,620	<b>468,100</b>

#### ※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

- 위원회운영, 학생자살예방사업(자살위기관리위원회운영, 자살예방캠페인, 자살예방 연수), 마음건강증진센터 사업(학부모공개강좌, 사례회의, 전문가협의회, 생명존중자살 예방캠페인)

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
#### 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: 교육국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

## 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	
세 입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618,100	
보통교부금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618,100	
세 출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618,100	
위기학생치료비지원	30,000	30,000	30,000	30,000	30,000	150,000	
학생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	93,620	93,620	93,620	93,620	93,620	468,100	
재원 조달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618,100	
의존 재원	소 계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618,100
	국고보조금						
	보통교부금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123,620	618,100
	특별교부금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자체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